

민원제기 및 의견서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 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홈리스행동

수신 국가인권위원회

날짜 2013년 3월 14일

분량 3쪽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개정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해 개정 및 폐지 권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발신인들은 아래와 같이 개정 경범죄처벌법과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래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법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은 작년 3월 전면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이미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개정 시행령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경범죄처벌법(이하 “개정법”)에 따른 후속조치인 만큼 개정법과 함께 그 문제유무를 살펴야 한다. 개정법과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그 동안 경범죄처벌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법규정의 추상성과 그로 인한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즉, 개정법은 기존 경범죄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제3조 제1항 제1호(빈집등에의 침입), 제2호(흥기의 은닉휴대), 제5호(시체 현장변경 등), 제19호(불안감조성), 제29호(공무원 원조불응), 제37호(무단침입) 및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함부로”[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 부착 등),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제12호(노상방뇨 등), 제15호(자연훼손), 제16호(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및 제27호(무단소등)], “억지로”[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 및 제14호(단체가입강요)], “못된”[제3조 제1항 제13호(의식방해) 및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 “몹시”[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 및 “지나치게”[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 및 제33호(과다노출)] 등 그 판단기

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적용의 위험성이 큰 용어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둘째, 개정법은 28개의 범칙금 부과대상행위(이하 “범칙행위”)를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사법기관의 관여 없이 경찰의 판단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이렇게 새로이 범칙행위로 포함된 것에는 과다노출이나 지문날인거부 등 종래부터 인권침해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어 왔던 것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어 보다 쉽게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졌다.

셋째, 범칙행위가 확대된 것이 앞에서 언급한 경범죄처벌법의 추상성 및 그로 인한 자의적 법집행가능성과 결합하여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넷째, 범칙행위가 확대되면서 경찰이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형사처벌할 행위를 범칙행위로 처리하게 되어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개정법 제8조 제3항(기존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두 번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행위로 인해 다시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을 잘못 집행하여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범칙금만 내고 면죄부를 얻는 경우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개정 시행령은 스토킹 등을 말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범칙금 8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실제로 2009년 5월 경북 경산에서 임신상태이던 옛 애인을 흥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나 같은 해 4월 전북 군산에서 자신의 짝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미용실 주인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등 스토킹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미국은 1990년부터 여러 주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에 처하는 '반(反)스토킹 법'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2000년부터 '스토키 규제법'을 시행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 한 여성을 17년 동안 스토킹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행위를 거짓전화를 한 행위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기존 경범죄처벌법은 타인에게 구걸행위를 시키는 것만 처벌하였으나 개정법은 구걸을 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하고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이렇게 개정법과 시행령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추상성과 자의적 법집행가능성만으로도 오래 전부터 폐지가 논의되어 왔던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고 오로지 경찰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반면에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국민의 자유는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 하에서도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어 왔고, 이명박 정부가 법치를 강조하였던 2008년도에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처벌되었다는 점을 보면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다. 당연히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살피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를 대폭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과 국민의 자유침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사고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귀 위원회에서 적절한 의견표명이나 권고가 있길 바란다.